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 설 · 강 화 규 제 심 사 안

< 목 차 >

1.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정지원
	담당부서 (과)	생활교통복지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이재평		연락처	044-201-3798
	과장	최정민		이메일	belief41@korea.kr

2024. 04. 09. 작성

종합교통정책관

이재평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 신설								
	2.규제조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안 제1조의3								
	3.위임법령	주차장법 제6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4.4.23~6.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주차장법 개정(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주차장의 설치주체에 대하여 규정 필요 -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주체를 규정하여, 국민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개입 필요								
	7.규제내용	○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 신설 -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차장 설치 주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차장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 주차장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td><td>성인남녀 7인 중 1인은 캠핑을 경험(14.4%)하였고, 그중 84%는 1박 이상 숙박. 전국민의 4.0%가 차박 경험** ⇒ 상당수의 야영객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td></tr></table> * 공영주차장 점령.... 알박기 주차에 쓰레기 투기('21.11.15. sbs) **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22.9. 한국관광공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 주차장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	성인남녀 7인 중 1인은 캠핑을 경험(14.4%)하였고, 그중 84%는 1박 이상 숙박. 전국민의 4.0%가 차박 경험** ⇒ 상당수의 야영객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 주차장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	성인남녀 7인 중 1인은 캠핑을 경험(14.4%)하였고, 그중 84%는 1박 이상 숙박. 전국민의 4.0%가 차박 경험** ⇒ 상당수의 야영객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이후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국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로 인한 이용자 불편, 쓰레기·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	-	-					
		피규제자 이외	-	-	-					
		정성분석	○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주차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취사행위 등을 막기 어려운 상황 지속 ○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여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로 인한 이용자 불편, 쓰레기·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 가능			
		주요내용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주차장 외의 목적 이용 시 강제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행정조치 및 국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성 개선에 기여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	-	-	-	
	15. 규제 정비 계획	해당없음				

〈 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조의3(주차장의 설치 주체)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 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 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 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된 주차장의 설치주체에 대한 규정 필요
 -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주체를 규정하여, 국민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개입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 신설
	내용	○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 규정 -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주체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차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행정조치 가능 -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 가능	- 공영주차장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이용자를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해당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 주차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등 기대

3. 규제목표

-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차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는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영향평가

본 규제는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제는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금지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해당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본 규제는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으로 일몰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미적용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도서생태계법 제8조제1항제12호

- * 특정도서 지역에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하천법 제46조제6호제가목

- * 하천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하는 금지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양생태계법 제47조

- * 공유수면의 출입·취사 또는 야영행위를 하는 금지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연공원법 제27조

- *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를 금지

→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일반국민 직접비용 정성분석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야영·취사행위 등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에 따른 주차공간 배화비용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 가능 및 안전사고 예방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행정조치 및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한 내
용으로 피규제자는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행정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 소요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3.4.17, 맹성규의원 대표 발의)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24.3.19)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없음

3. 종합결론

-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금지행위가 규정되는 주차장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야영·취사행위 등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불가에 따른 주차공간 배회비용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 가능 및 안전사고 예방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주차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취사행위 등을 막기 어려운 상황 지속
 - * 주차장 외의 목적 이용 시 강제조치(이동명령, 견인 등) 가능하나, 지자체에서는 차량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
-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여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로 인한 이용자 불편, 쓰레기·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 가능
 - 특히, 캠핑차량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주차 목적을 하는 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주차된 차량의 화재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공영주차장에 야영·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쓰레기 등이 줄어들어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 가능